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2 2019년 8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8월 29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김의승)

### 가.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 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 14조에 의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3.1. ~ 2023.2.28.)
  - 위탁사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20년 소요예산 : 4억원(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 필요성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

-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 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제5조

제5조(관련업무 위탁) ① 지자체장은 관내 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제13조

제13조(신청 자격) 법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 센터 위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본예산 편성 : 4억원(국비1억원, 시비3억원)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1부.

##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 재 효)

#### 가, 개요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현황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제17조의3에서는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의 심각 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에 따라 201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15년)」을 통해 2020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에 지역 센터설치를 밝힌 바 있으나.

2018년 12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개 시·도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고 실제 8개 시·도만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2) 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 현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녹색제품 생산지원,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친환경 소비자 양성 등을 통해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등 민간부문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난 3월,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2020년 국고보조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 개정을 통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2020년 3월 이후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기 추진 과정	향후 추진 계획			
- '19.03월 '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ul><li>'19.08월 동의안 상정 및 심의</li></ul>			
- '19.O3월 관련 조례 개정	- '19.10월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04월 토론회 개최 <sup>1)</sup>	- '2O.O1월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19.06월 지원센터 설차운영 계획 수립	- '20.03월 위·수탁협약 체결			
	- '20.04월~ 민간위탁 운영			

### 3)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법 제17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도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법령 및 조례에

<sup>1)</sup> 지원센터 역할, 민간영역에서 녹색구매 운동사례, 서울시 정책연계, 녹색상품 기업연계 방안 등 제시

서는 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서울시 사무로 분류하고 있음.

○ 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제3호 따라 서울 지역 내 활동 중인 시민단체 등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2017.7월)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례 제14조제3항(2019.3.28 신설)에서도 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설치·운영 중인 8개 광역지자체 지원센터는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지원센터 위탁 현황〉

구분	경기	부산	제 주	충북	대 전	세종	광주	인 천
	안산센터	센터	센 터	센터	센 터	센터	센터	센 터
운영	경기도	부산	제주특별	충청북도	대전	세종특별	광주	인천
주체	안산시	광역시	자치도		광역시	자치시	광역시	광역시
위탁 기관	안산녹색 소비지연대	(사)에코 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터	대전주부 모니터링 봉사단	세종지속 가능발전 협의회	광주4비자 공익네트 워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 4)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적정성

-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경우 환경부 지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설치하는 것으로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은 없음.
- 지원센터 운영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정액)과 시비 3억원

(국비 이상)을 포함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등 사업비 (36.1%), 인건비(34.4%), 운영비(28.3%)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설치운영비 세부내역 참조).

○ 지원센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총 5명이고 전원 상근직원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비상근직원 없이 상근직원으로만 충워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지원센터 운영 인력 현황〉

구분	경기 안산센터	부산 센터	제 주 센 터	충북 센터	대 전 센 터	세 종 센 터	광주 센터	인천 센터
운영 이력	,		l '		상근 3명, 비상근 1명	상근 3명, 비상근 1명	상근 3명, 비상근 0명	상근 3명, 비상근 2명
[인덕	비상근 3명	미성근 4명	미성근 0명	미성근 2명	미성근 1명	미성근 1명	미성근 0명	미성근 2명

○ 지원센터 규모는 직원 사무실과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등을 감안하여  $165m^2$  이상<sup>2</sup>)을 계획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는 서울시 소유·관리 건물 (서울혁신파크, 새활용플라자<sup>3</sup>)) 또는 민간 건물 임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원센터 특성상 공공성 확보 및 시민 접근성 측면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

<sup>2)</sup> 현재 설치·운영 중인 지원센터 규모는 40㎡(인천센터) ~ 276.6㎡(대전센터) 수준임.

<sup>3)</sup> 서울혁신파크(은평구 녹번동), 새활용플라자(성동구 용답동)

## [참고자료]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토론회 결과보고

#### □ 개최결과

○ 일 시: '19. 4. 11.(목)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 토론회 주요내용

#### ○ 지역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

- 직접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지역 네크워크 주체들과 협약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지역에서 직접 프로그램 기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에 포커스를 맞춰옴
- 공공분야의 녹색구매보다는 민간분야의 활성화로 초점 변경이 필요한 시점임
- 나들가게와 연계하여 녹색매장으로의 지정을 지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도움 및 지역에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임

#### ○ 민간영역에서의 녹색구매 운동사례

- 녹색구매네트워크(GPN)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단계와 관련된 각 경제주체가 녹색 구매 생산·소비를 촉발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함
-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녹색상품을 추천하여 녹색상품 인식개선 및 친밀성 향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녹색상품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함

#### ○ 서울시 정책연계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기능을 취사선택하여 시민실천(시민소비생활), 녹색상품혁신 (기업) 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로 소비에 대한 결정이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녹색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 녹색상품 기업연계

- 녹색제품 범위에 환경보건 분야의 제품도 포함시켜 홍보 및 지원해야 함
- 환경표지 인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을 활성화 시켜야 함

#### ○ 기타의견

- 이미 기반을 갖춘 유통업체를 발굴하여 친환경상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정보 전달 및 지원하는 것도 녹색제품 판로에 도움이 될 것.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번 호

952

제출년월일: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과 민간 차원의 녹색생활 실천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및「서울특별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하여
- 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20.3.1. ~ 2023.2.28.)
- 위탁사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20년 소요예산 : 4억원(국비 1억, 시비 3억)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3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 ○ 필요성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4조

- 제14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시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6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제5조

제5조(관련업무 위탁) ① 지자체장은 관내 지원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제13조

제13조(신청 자격) 법 제17조의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본예산 편성 : 4억원(국비1억, 시비3억)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운영비 세부내역. 전국 운영현황 각 1부

※ 작성자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팀장 박성제 ☎ 2133-3533 / 담당 이지안 ☎ 2133-3538)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계획

녹색소비문화 형성 및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 운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녹색제품**1)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74호) <u>과제1</u> **9** 
  - ▶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 서울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 □ 추진배경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에 따라 공공부문의 구매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의 구매기반은 미흡
-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등 민간부문의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주도하는 센터 설치의 필요성 제기로 전국 18개 시ㆍ도로 지역센터 확대 추진(환경부)
  - ※ '17년(6개) → '18년(8개) → '20년(17개)

### □ 추진경과

○ '20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 환경부) : '19. 3.22.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19. 3.28.

※ "서울특별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토론회 : '19. 4.11.

<sup>1)</sup>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환경표지 인증 상품, 우수재활용 인증 상품 / 사무용품, 건설자재 등)

<sup>※</sup> 녹색생활 :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 Ⅱ 비전 및 연도별 추진전략

비 전

##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서울』

정 책 목 표

추

진

전

략



	구분	추진시기	주요사업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			
			·녹색구매 활성화 교육 및 녹색소비 지도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녹색기반 형성기	2020~	·녹색제품 홍보·전시 및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1차)	2021	·녹색소비, 녹색구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수집			
			· 인증설명회 등 기업대상 환경마크 인증 지원			
			·녹색소비(구매) 네트워크 구축			
		2022~ 2023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활동			
	지원활동 발전기		· 녹색소비생활 실천교육 양적 확산 및 시스템(매뉴얼 등) 개발			
	(2차)		·녹색소비 활성화 실행네트워크 및 지도자의 다양할 활동 지원			
			·나들가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녹색매장 확산 추진			
	지원활동 안정기 (3차)		·서울의 녹색소비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질적으로 발전된 녹색소비생활 실천교육 운영			
		2025	· 각종 네트워크 및 지도자 활동 안정화 및 역할강화 모색			
			·녹색구매지원센터 평가 발전방안 연구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 운영 계획

### □ 설치개요

III

○ 주요업무 : 민간부문의 친환경소비 실천기반 구축 사업 운영

○ **운영인력** : **5명**(센터장 포함) ※ 전원 상근직원

○ **총사업비** : **연 4억원**(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세부내역 별첨

○ 센터규모 : 165*m*<sup>2</sup> 이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등

구 분	계	사무실	상담실	전시관	회의실
면적	165m <sup>2</sup>	$25 \text{m}^2$	$25 \mathrm{m}^2$	75m <sup>2</sup>	40m <sup>2</sup>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 교육인원이 많을 때는 시청 대회의실 등 관공서 회의실 이용

○ 설치방법 : 서울시 소유·관리 건물 또는 민간 건물 임대

구분	장 소	위 치	장 점	단 점
1안	서울혁신파크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ul><li>대중교통 이용이 편리</li><li>파크내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가능</li></ul>	<ul> <li>서울에서 다소 외곽에 위치</li> <li>19년말 하반기 혁신파크 재구성 계획 중으로 현재 협의 중</li> </ul>
(공공)	새활용플라자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용답동)	· 친환경제품 전시공간, 교육장, 회의실 등 공동 이용 가능	<ul><li>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짐 → 장한평역 도보 20분</li></ul>
2안 (민간)	-	-	、다양한 위치에서 센터 설치・운영 가능	、공공성 부족 、사무실 임차료 별도 편성

- 서울시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불가능할 경우 수탁자가 서울시내 적정한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사무실 활용

※ 공공성 확보 가능하고, 시민 접근이 편리한 지역

## □ 운영방법 : 민간위탁(공개모집)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금액** : **4억원/년**(국비 1억원, 시비 3억원)

○ 위탁범위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전반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20. 1월 공고 예정

- 비영리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위탁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되,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민간위탁 필요성

-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서울시 녹색소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녹색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서울 지역 내 활동 중인 시민단체를 적극 발굴 및 활용을 통해 환경 분야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정책과 시민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센터 운영의 전문성·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식,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법인)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소비도시 조성을 달성하고자 함

### ──〈※ 참고 : 녹색구매지원센터 위탁 현황〉──

구분	경기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광주	인천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위탁 기관	인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 언니야	제주환경 운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터	대전주부 모나터링봉 사단	세종지속 가능발전 협의회	광주소비 자공익네 트워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 19.6월 기준 전국 시·도 8개의 녹색구매지원센터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

## □ 민간위탁 사업내용2)

#### ○ 친환경 소비자 양성

- 녹색어린이집, 녹색학교 등 미래세대 친환경 소비생활 교육 필수
- 공공기관 대상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 녹색소비 지도자 및 강사 양성 교육

### ○ 친환경 소비문화 형성

- 지역 축제, 행사와 연계한 친환경소비 캠페인 운영 필수
-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녹색제품 체험단 운영, 유통매장 연계 친화경소비 캠페인
- 녹색소비, 녹색구매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 온라인(홈페이지, SNS, 블로그) 및 지역 미디어 등 홍보

#### ○ 녹색제품 생산지원

- 환경마크 인증 지원(인증설명회 개최 등) 달수
- 인증제품 지역 수요처 발굴 및 구매연결
- 인증제품 사후관리 모니터링
- 친환경 어린이용품 발굴, 지원

## ○ 녹색제품 유통 활성화

-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유도 필수
- 대형유통매장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 친환경 위장제품 모니터링

<sup>2)</sup> 녹색구매지원센터 성과지표 연구 보고서 상 사업내용(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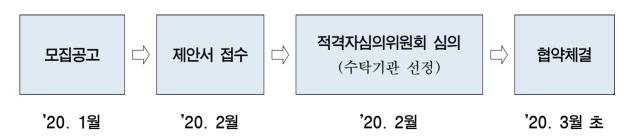
## Ⅳ 위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 □ 위탁기관 심의·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6명~9명 이내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해당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워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 (평가방법 및 선정) 평가기준<sup>3)</sup>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60점 이상의 최고점수 획득기관을 최종 선정
- ※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심의하며, 제출기관이 출석하여 직접 설명
- 주요평가 내역

분 야	평 가 기 준
참여 인력	<ul><li>▶ 지원센터 사업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 확보</li><li>▶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li><li>▶ 센터장의 추진능력 및 경험</li></ul>
수행 능력	<ul><li>▶ 위탁기관의 역량</li><li>▶ 기 구축된 네트워크(온·오프라인)</li></ul>
사업비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사업 계획	<ul> <li>▶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li> <li>▶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li> <li>▶ 지역 내 녹색소비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li> <li>▶ 추진 계획의 차별성</li> </ul>

#### □ 선정절차



<sup>3)</sup> 녹색구매지원센터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상 평가기준

## V 향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7.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시의회): '19. 8.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19.10.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20. 1.

○ 비용심사,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0. 2.

○ 서울시 ↔ 수탁기관간 위·수탁 협약 체결: '20. 3.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 4.

○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 '20. 4.~ 6.

○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 6.~12.

## 첨부 2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세부내역(안)

	구분	산출내역	소요액 (천원)
합 계			400,000
	정보제공 사업	○ 통합 홈페이지 운영 ○ 녹색매장 등 관련사업 연계 프로그램 기획 ○ 홍보물, 홍보리플렛 제작 ○ 홍보 캠페인	62,000
사 업 비	교육사업	○ 지도자양성 교육 강사비, 진행비 ○ 녹색소비 실천교육 강사비, 진행비	61,890
	모니터링	○ 유통매장 조사활동비 ○ 소비자인식 조사활동비	8,000
	협력사업	○ 녹색소비 네트워크 구축 회의비 등	8,000
	기타사업	○ 환경교육 한마당 참여 등	4,500
인 건	급여	○ 센터장(상근) - 3,500천원×9개월×1인= 31,500천원 ○ 상근인력 - 2,600천원×9개월×4인= 93,600천원	125,100
비	퇴직급여 충당금	○ 센터장 - 350천원×9개월×1인= 3,150천원 ○ 상근인력 - 260천원×9개월×4인= 9,360천원	12,510
운영비		○ 시설비(설치 및 기본시설 보강) - 70,000천원 ○ 일반수용비(공과금, 사무용품 등) - 1,000천원×7개월 = 7,000천원 ○ 여비, 운영수당 = 6,00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금 - 700천원×9개월 = 6,300천원 ○ 사무집기·기기 구입(컴퓨터, 복사기 등) - 24,000천원	113,300
	간접비 ქ비의 5%)	<ul><li>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제경비 등</li></ul>	4,700

<sup>※</sup> 사업비 및 운영비 산출은 세부계획에 의해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첨부 3

## 전국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현황

## ○ 운영현황

구분	경기안산 센터	부산센터	제주센터	충북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광주센터	인천센터
운영 주체	경기도 안산시	부산광역시	제 <del>주특별</del> 자 치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 <del>종특별</del> 자 치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개 소 일	'13.5.27	'13.6.27	'14.7.8	'14.8.27	'15.8.13	'17.11.27	'18.7.26	'18.8.27
소재지 (주소)	경기도 안신시 단원구 고잔로 76 맘모스프라 자 1316호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7(남포동 광복지하 도상가 A56~58)	제주도 제주시 동광로 112 (일도이동 2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 (6층, 개신동 436-7)	대전시 중구 중앙로 지하145( 대흥동 D가 48~49호)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고용복지플 러스센터 102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지하 152 양동시장역 107-2호	인천시 남구 예술로 지해/72 문화예술회 관역 지하2층 11호
센 터 면 적	76.367 m²	171.561 m²	210 <sup>m²</sup>	165 m²	276.6 <sup>m²</sup>	83m²	115 <sup>m²</sup>	40 m²
'19년 예산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2억 (국시비 각1억)
운영 인력	(상근) 2명, (비상근) 3명	(상근) 2명, (비상근) 4명	(상근) 3명, (비상근) 0명	(상근) 3명, (비상근) 2명	(상근) 3명, (비상근) 1명	(상근) 3명, (비상근) 1명	(상근) 3명, (비상근) 0명	(상근) 3명, (비상근) 2명
위탁 기관	안산녹색 소비자연대	(사)에코언 니야	제 주환경 운동연합	생태교육 연구소 터	대 전 주 부 모니터링봉 시단	세종지속 가능발전 협의회	광주소비 자공익네 트워크	인천녹색 소비자연대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